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